
7. 회원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

가입 및 탈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곡성군체육회 정관 제6조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곡성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회원종목단체 정관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원종목단체의 가입신청서류)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별지 1호 서식)
2. 임원 명단
3. 단체의 규정
4. 산하클럽 및 팀 단체 현황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 정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곡성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4. 본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5. 전라남도체육대회 및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에 정식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정회원 종목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곡성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4. 본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곡성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4. 본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인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정관 제10조에 따른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8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는 탈퇴하게 한다.

1. 본회 회원종목단체가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본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본회 회원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본회 회원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본회 회원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종목단체인 경우
- ② 본회 회원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탈퇴신청) 곡성군 회원단체가 본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 신청서 (별지 2호 서식)
2.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참석자 서명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곡성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탈퇴신청서

■ 신청단체 현황

단체명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 탈퇴신청 사유

상기와 같이 곡성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인)

대표자 : (인)